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10. 1 선고 2021가단11695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1. 9. 10.

판 결 선 고 2021. 10. 1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14,349,038원 및 그 중 10,000,000원에 대하여 2021. 3. 9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.7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 2018. 3. 8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약정을 14,349,03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3. 피고 C는 원고에게 14,349,03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근거

가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: 피고 B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

나.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: 피고 C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

판사 박형순

별지